

동물실험윤리위원회규정

개정 2020. 11. 24.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동물보호법」 제25조에 따라 경희대학교(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소속된 교·직원 및 연구원(석·박사 과정생을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교내·외의 모든 척추동물실험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기관의 윤리위원회 심의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 ② 본 규정은 본교의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사후처리와 동물실험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기능 등)

- 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척추동물을 실험대상으로 사용하여 연구 및 실험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윤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심의 및 승인
 2. 동물실험이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의 원칙에 맞게 시행되도록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도·감독
 - 가. 동물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생산·도입·관리·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뒤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 나.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 다. 동물실험 및 동물실험시설의 동물복지 수준 및 관리실태에 대한 확인 및 평가
 3.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에게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요구
 4. 동물실험시설의 표준작업서에 대한 사항을 심의
- ② 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동물실험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에 관한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 ③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된다.

제4조(구성)

- ①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본교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단, 제2항 제1호부터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위원은 본 시설에 종사하지 않고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총장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자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1. 수의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
 - 나.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수의사
 - 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수의사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영 제5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동물보호나 동물복지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영 제5조 각 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동물보호·동물복지에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위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는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철학·법학 또는 동물보호·동물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다. 그 밖에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구성방법)

① 총장은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제4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 적임자를 선택하여 제4조 각 항에 적합하도록 구성하고, 윤리위원회 구성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검역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를 통지한 윤리위원회 위원이나 위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 총장은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검역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윤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윤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

① 윤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구처 또는 산학협력단의 윤리위원회 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윤리위원회의 안건 검토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2. 윤리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행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명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 1인 이상의 전문위원을 선정하여, 간사와 함께 윤리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미리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윤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윤리위원회 위원의 이해관계의 범위)

① 제4조 제1항에서 본교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1. 최근 3년 이내 본교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2. 본교의 임직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

3. 본교에 실험동물이나 관련 기자재를 공급하는 등 사업상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의 임직원

4. 본교의 계열회사 또는 학교법인 경희학원에 소속된 임직원

제9조(운영)

①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총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동물실험시설 운영자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평가하는 회의에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이 반드시 1명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 등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된 기록 및 문서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④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윤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2. 윤리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 및 시행

3.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장소, 비용 등에 관한 적절한 지원

⑥ 윤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회의로 이를 대체할 수가 있으며, 이 때에는 의결권이 있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윤리위원회 회의는 논의할 안건이 없거나 위원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동물실험계획서 심사 및 평가)

① 본교에서 척추동물을 이용한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이하 "동물실험자"라 한다)는 윤리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동물실험자는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승인된 기한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험을 재개하여야 한다. 변경신청은 심의기간을 고려하여 승인유효기간 최소 1개월 전에 해야 한다.

③ 접수된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동물실험변경 승인신청서는 위원들에게 검토를 의뢰하되, 위원 중에 담당 전문위원 2명을 선정하여 전문적인 검토 의견을 윤리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승인한 실험이 매년 반복되는 동일한 동물실험인 경우, 승인된 기한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윤리위원회에 재승인을 받은 후 실험을 진행하여야 한다. 재승인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재승인 신청은 심의기간을 고려하여 승인유효기한 최소 1개월 전에 해야 한다.

⑤ 윤리위원회는 동물실험 심의·평가에서 다음 각 호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1. 동물실험의 필요근거

2.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

3.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관리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

4.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여부

5.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처리기준의 합리성 여부

6.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

7.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그 동물의 고통감소방안을 강구하였는지 여부

8. 동물보호법 제23조의 준수 여부

9.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실험에 관련된 지식 및 훈련이수 정도

10. 기타 윤리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장은 윤리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동물실험 심의·평가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경희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통지서를 동물실험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⑦ 윤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동물실험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⑧ 심의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⑨ 심의와 관련된 행정절차상의 세부사항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승인 및 조치)

- ① 윤리위원회는 동물실험 진행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동물실험자로부터 적절한 보고를 받거나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동물구매는 윤리위원회에서 동물실험계획이 승인된 후에만 가능하다.
- ③ 윤리위원회는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서에 따라 동물실험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또는 동물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나 고통을 유발한 경우에는 동물실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동물실험 종료 후 연구책임자는 위원회에 별지 제5호서식의 동물실험계획 종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윤리위원회는 동물실험의 종료를 확인하고 기타 동물실험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 ⑤ 동물실험에 관련된 문서는 해당 실험이 종료된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관장)

연구처 또는 산학협력단은 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3조(보칙)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9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윤리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윤리위원회로 보며,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2012년 7월 1일에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본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9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0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서약서

서 약 서

성 명 :

소 속 :

본인은 본 연구수행을 위하여

1. 본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방침 및 동물실험 관련 법규를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2.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과 3R원칙에 따라 동물실험의 수행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3. 동물보호법 및 본 위원회에서 검토 후 승인한 동물실험 방법을 준수하겠습니다.
4. 연구 승인 기간은 최대 1년임을 확인하였으며, 1년이 초과할 경우 재승인 받겠습니다. 또한 승인된 계획을 변경할 경우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통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알리고 승인을 받겠습니다.
5. 연구책임자로서 등록된 실험수행자들이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과 승인된 동물실험 방법을 준수하도록 책임·지도하겠습니다.
6. 이 연구의 동물실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실험동물시설 이용자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동물 다루기, 마취제 투여, 무균처리 등의 적절한 교육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입니다.
7. 계획서에 기재된 사항들은 정확하며 위반 시 실험동물시설의 이용제한을 포함한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8. 위 사항의 이행과 함께 위원회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결정에 적극 협조하고 따를 것을 서약하며 본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신 청 자 : (인)

[별지2]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1. 일반사항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직급	연락처	이메일	역할	교육이수번호 (이수날짜)
							내부/외부교육 모두 이수증 첨부 필수 (유효기간:2년)
실험수행자							
연구비	<input type="checkbox"/> 내부 <input type="checkbox"/> 외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연구비지원기관				
심의종류	<input type="checkbox"/> 일반심의 <input type="checkbox"/> 신속심의		연구기간		승인일 ~ 년 월 일		

- ※ 역할은 동물실험 절차 중 담당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관리 및 사육, 보정, 접종, 채혈, 마취, 외과적 처치, 안락사)
- ※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본 실험계획서 수정을 요청할 경우 처리할 분의 이름을 굵게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교육 미이수 시 동물실험이 불가능합니다. 심의신청일 기준 2년 이내 교육 이수한 번호 기입과 수료증을 필히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연구시작일은 승인일 이후여야 하며, 최대 1년입니다. 종료일이 정해져 있을 시 해당 연월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1 : 승인일~12개월, 예2 : 승인일~2015년 6월 30일)

2. 연구 목적과 예상 성과

- ※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실험동물을 사용하여 얻어지는 학문적 및 경제적 가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목적	
예상성과	

3. 사용할 실험동물의 수

사육시설 및 관리	사육시설	대학 층 호
	사육시설 이외의 실험동물 이동	건물 층 호 또는 연구실
	주거 Enrichment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있음”인 경우, 자세한 내용을 기술. 설치류의 경우 작은 tube나 기등, 토끼는 나무토막, 돼지 이상은 장난감 등)
	실험을 위해 반입하여야 하는 물품 또는 장비	(케이지, 사료, 깔짚 등)
	실험자 안전을 위한 보호 물품 및 대책	(글러브, 마스크, 방역복, 장화 등)
	사료·음수· 운동 제한 (복수선택가 능)	<input type="checkbox"/> 사료 제한 <input type="checkbox"/> 음수제한 <input type="checkbox"/> 운동제한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제한사유:)

4. 동물실험의 내용

※ 실험동물에 행해지는 동물실험의 내용에 관하여 상세히 기술해 주십시오.

특히 실험동물을 각 군으로 나눌 경우 이에 관하여 상세히 기술하십시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상사항 없음”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실험내용	
------	--

	투여(접종)물질	실험별 진행기간	용량 및 횟수	투여(접종)방법	보정법
실험방법	투여(접종)물질의 특성		□생물학적 위험물질 (재조합DNA 투여 등) □바이러스 □세균 □백신 □기타: (특성에 대해 자세히 기술)		
	투여물질이 실험동물에 미치는 영향				
	투여물질이 환경노출 시 미치는 영향				
	시료채취 (부위 및 방법)		(채혈의 경우 부위, 양, 횟수, 방법 자세히 기술)		
	주사 또는 주입		(물질, 용량, 부피, 경로, 주입 일정 등 자세히 기술)		
	채혈		(부피, 빈도, 채혈부위, 방법 등 자세히 기술)		
	비 생존수술		(생존수술에 관해서는 다음 항목에 자세히 기술)		
	방사선 조사		(용량과 조사일정 등 자세히 기술)		
	속박 수단		(동물을 속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방법을 기재. 예: 목걸이 줄, 마구, 뱃줄, 등)		
	개체 식별 방법 기타		(귀걸이, 꼬리표, 문신, 목걸이, cage 카드 등 자세히 기술) (검시, 조직채취, 장기적출, 세포분리, 스트레스 후 행동평가 등에 대한 내용 등이 있을 경우 자세히 기술)		
	실험종료 기준		(실험동물에 처리한 종양세포, 전염원, 방사선, 또는 독성 화학약품 등이 상당한 병적 징후나 잠재력 치사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체중증가 또는 감소의 %, 음식물 섭취능력, 행동적 이상, 병적 증세, 독성의 징후 정도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험에서 계획한 종료 기준이 아니며, 실험 수행 도중에 병적 징후가 있을 경우, 안락사가 필요한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실험종료기준으로 삼는 경우에는 과학적 정당성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	-------------

5. 생존수술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내용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실험방법	수술과정	
	수술자와 수술자의 경험과 자격	
	수술장소	
	수술 후 관리 책임자와 관리방법	
	동물 당 두 가지 이상의 대수술을 진행하는지의 여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있음"인 경우, 정당한 이유 기술)

6. 동물실험의 범주 및 종류

※ 범주5에 해당하는 경우 과학적 정당성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동물실험의 범주 (하나만 선택)	<input type="checkbox"/> A. 세균, 원충 및 무척추동물을 사용한 실험, 연구, 수술 또는 시험 <input type="checkbox"/> B. 척추동물을 사용, 고통/스트레스가 없이 사육, 적응, 유지하는 실험 <input type="checkbox"/> C. 척추동물을 사용, 고통/스트레스가 거의 없어 마취제나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는 실험 <input type="checkbox"/> D. 척추동물을 사용, 고통/스트레스가 있어 적절한 마취제나 진통제 등을 사용하는 실험 <input type="checkbox"/> E. 척추동물을 사용, 고통/스트레스가 있으나 마취제나 진통제 등을 사용하지 않는 실험	
대체방법	<input type="checkbox"/> 있다	대체법이 있으나 동물실험을 해야 하는 이유

	<input type="checkbox"/> 없다	동물실험 대체방법을 검색한 자료 및 검색 시 사용한 키워드 (불필요한 반복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대체방법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함)	<input type="checkbox"/> PubMed Database <input type="checkbox"/> Current Contents <input type="checkbox"/> Science Citation Index <input type="checkbox"/> 그 외 : 키워드 :
동물실험의 종류 (복수선택가능)	<input type="checkbox"/> 병원성실험 <input type="checkbox"/> 독성실험	<input type="checkbox"/> 단클론항체생산 <input type="checkbox"/> 단순채혈	<input type="checkbox"/> 항혈청생산 <input type="checkbox"/> 그 외 :

7. 실험동물의 고통경감 방법

※ 실험과정 중 또는 종료 시에 실험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구분	약물명	용량	투여경로	실시자	비고 (향정신성약물 사용 시 마약류취급허가번호 기입. 근이완제 사용 시 이유 제시)
<input type="checkbox"/> 마취제					
<input type="checkbox"/> 진정제					
<input type="checkbox"/> 진통제					
외과적 처치 (해당 시 작성)					
인도적 실험종료 기준	(동물실험중동물의 고통을 종료하기 위해 연구목적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험을 일찍 종료하는 기준)				

8. 실험종료 시 안락사 방법과 사체 처리 방법

안락사	<input type="checkbox"/> 주사마취제 (약물명: / 용량: / 경로:) <input type="checkbox"/> 흡입마취제 (약물명: / 농도:) <input type="checkbox"/> 이산화탄소가스(농도:) <input type="checkbox"/> 진정 또는 마취 후 경추탈구 <input type="checkbox"/> 진정 또는 마취없이 경추탈구 <input type="checkbox"/> 전기충격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인도적 실험종료 시 안락사 : (□ 정상 실험종료 시 안락사방법과 동일함 <input type="checkbox"/> 정상 실험종료 시 안락사방법과 다름. 방법기재:)
실험동물 사체처리	<input type="checkbox"/> 학교 계약 업체에서 수거 <input type="checkbox"/> 소각 <input type="checkbox"/> 기타 :
적용소독제	

9. 생물학적 위해 물질 실험

※ 생물학적 위해물질을 동물실험에 이용하는 경우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nfectious agent의 경우 미국 CDC의 Biological level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투여물질 <input type="checkbox"/> 용량 및 횟수	
	<input type="checkbox"/> 투여방법	
	<input type="checkbox"/> Biological level	<input type="checkbox"/> 위해 없음 위해도 유무 및 정도 (연구자 혹은 실험동물에게) <input type="checkbox"/> 사람→동물 간 전염 가능() <input type="checkbox"/> 동물→동물 전염 가능() <input type="checkbox"/> 생물 유해 물질이 동물에서 배출될 가능() <input type="checkbox"/> 배출 경로()

10. 인체에서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 실험

해당 여부	□ 해당	□ 해당 없음
		IRB 승인기관 및 승인번호
		Source
		Species of recipient

위해도 유무 및 정도 (연구자 혹은 실험동물에게)	□ 위해 없음
	□ 사람→동물 간 전염 가능() □ 동물→동물 전염 가능() □ 생물 유해 물질이 동물에서 배출될 가능() □ 배출 경로()

[별지3]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

위원회 승인번호								
과제명 (한글/영문)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직급	연락처	비상연락처			
실험변경 내용	<input type="checkbox"/> 비생존수술에서 생존수술로 변경 <input type="checkbox"/> 동물 사용 마리수의 증가 <input type="checkbox"/> 진정·진통·마취 방법 <input type="checkbox"/> 안락사방법 <input type="checkbox"/> 실험기간의 변경 또는 3개월 이내의 실험기간연장 <input type="checkbox"/> 그 외 실험방법 등 (변경사항 기입)			<input type="checkbox"/> 동물 종 <input type="checkbox"/> 시료채취 및 투여, 장소 변경 <input type="checkbox"/> 연구책임자 또는 실험수행자				
	실험변경 사유							
변경내역		기존			변경			
수술방법								
동물종								
동물 사용수								
시료채취 및 투여, 장소 진정·진통·마 취방법 안락사방법								
실험기간변경 /연장								
연구책임자 또는 실험자	성명	소속	연락처	교육번호	성명	소속	연락처	교육번호

그 외								

[별지4]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

위원회 승인번호			기승인 실험기간	20 . . . ~ 20 . . .				
과제명 (한글/영문)								
실험목적								
재승인신청 실험기간	20 . . . ~ 20 . . . 총 (2, 3)년 승인 중 (2, 3)년째							
동물실험계획	<input type="checkbox"/> 변경없이 계속 <input type="checkbox"/> 변경후 계속 (필요시 변경승인신청서 함께 제출) <input type="checkbox"/> 기타 (동물실험계획의 취소 등의 경우 그에 대한 설명) 해당 년차의 사용 실험동물 종류 및 마리수, 안락사 방법 기재							
승인 받은 실험 계획	1년차							
	2년차							
	3년차							
역할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교육이수번호			

「별표 양식 1」

연구책임자					
실험수행자					
실험변경사항	최초 승인받은 실험계획과 다른 변경사항 있을 경우 간략히 기재				

※ 재승인 신청 내용이 반영된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함께 제출하여야 함.

[별지5] 동물실험계획 종료보고서

동물실험계획 종료보고서

승인번호				
과제명	(국문)			
변경 승인 여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변경승인번호 :)			
연구책임자	이름	소속	직급	연락처
내 용	승인사항		실제 사항	
실험 기간				
동물실험 수행자				

「별표 양식 1」

동물 종 (계통)		
동물품질등급		
총 사용 마리수		
고통등급		
안락사방법		
교육이수증 제출 여부		
기타사항		
상기 동물실험에 대해 종료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별지6] 경희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통지서

경희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통지서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직급
승인번호	KHUASP(SE)-		

「별표 양식 1」

연구과제명				
사용 동물 종 및 마리 수	<input type="checkbox"/> Mouse (마리) <input type="checkbox"/> Rat (마리) <input type="checkbox"/> Rabbit (마리) <input type="checkbox"/> 기타 (마리)			
	<input type="checkbox"/> 일반심의 <input type="checkbox"/> 신속심의 <input type="checkbox"/> 재승인			
심의대상	<input type="checkbox"/> 연구계획서(신규) <input type="checkbox"/> 연구계획서(보완) <input type="checkbox"/> 계획서변경 <input type="checkbox"/> 종료보고서 <input type="checkbox"/> 승인된 연구계획서의 1년 단위 재승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승인 <input type="checkbox"/> 수정후승인 <input type="checkbox"/> 수정후재심의 <input type="checkbox"/> 불승인			
승인날짜	년	월	일	사육실
연구기간				
재승인심의주기	<input type="checkbox"/> 3개월 <input type="checkbox"/> 6개월 <input type="checkbox"/> 1년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재승인심의주기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input type="checkbox"/> -			

본 위원회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NVRQS)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제도에 관련한 규정에 따라 운영하며, 동물보호법과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OIE)의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 실험종료 후 60일 이내에 종료보고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통지서를 받으신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희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 (인)